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가합537427 동영상 및 게시글 삭제 등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0. 6. 5.
판 결 선 고	2020.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1 목록 순번 1 동영상을 유튜브 '○○TV' (https://www.youtube.com/watch?v=**********), 별지1 목록 순번 2, 3 각 게시글을 네이버 카페 'C' (https://cafe.naver.com/*****/********) 및 네이버 블로그 'a__****' (https://blog.naver.com/*********/220*********)에서 각 삭제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입시학원 강사이고, '◎◎대 공부의 신 A의 대박타점 공부법'이라는 제호의 서적(이하 '**원고 서적**'이라 한다)을 저술하여 2012. 4. 16. 초판을 발행하였다. 원고 서적에는 별지2 기재 '벼락치기 필살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네이버 카페 C, 네이버 블로그 등에 입시 관련 글을 게시하고,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시 관련 영상을 제작하여 소개하고 있다. 별지3 기재 벼락치기 공부법에 관한 영상과 게시글이 그 중 일부이다.

다. 원고는 피고의 별지3 기재 영상, 게시글이 원고 서적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10. 31.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서적의 '벼락치기 필살기'(별지2 기재)의 내용 중 '① 필살기 1. 한만큼 오른다, ② 필살기 2.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③ 필살기 3. 문제 읽고 바로 답 읽기'의 내용을 도용하여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게시하였다. 이는 원고 서적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침해행위의 정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그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

다만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의 표현과 동일·유사한 경우는 물론 기존 이론이나 개념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의하여 설명하거나 정리한 경우 또는 논리구성상 달리 표현하기 어렵거나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복제권 등의 침해도 인정될 수 없다.

한편 원 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작권법 소정의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

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 저작물 중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대방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원 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서적의 저작물성 여부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① 원고 서적의 별지2 기재 부분은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벼락치기 공부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원고는 이를 「필살기 1. 한만큼 오른다, 필살기 2.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필살기 3. 문제 읽고 바로 답 읽기, 필살기 4. 내신은 적중의 싸움, 필살기 5. 채점하지 말기, 필살기 6. 등굣길에도 공부하기, 필살기 7. 놀지 말기」라는 소제목을 달아 7가지 비법으로 나누어 각 항목에서 구체적인 공부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② 원고 서적이 출판(2012. 4. 16.)되기 이전에 공부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글들이 공표되었다.

구분	내용

▲▲닷컴 2010. 4. 20.	[전략1] 마음이 10점을 좌우한다. 중하위권은 '이미 늦었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번만 망치고 다음부터는 꼭 준비해서 성적 올려야지'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 ... 마음을 잡고 공부하면 중하위권이라도 최대 평균 10점까지 올릴 수 있다.
△△△△ 알파 2009. 10. 30.	공부만큼 정직한 것도 없다. 한 만큼 성과가 나온다.
◇◇◇의 □□원리 2007. 7. 2.	문제집을 늘 푸는 게 좋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벼락치기 공부를 해야 할 때는 교과서나 참고서를 보는 것보다 문제집의 문제와 답, 해설만 읽고 가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다.
◈◈◈◈ 3주만에 바뀐다 2005. 7. 11.	나는 문제집을 여러권 보는 스타일인데,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읽고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즉, 과목당 문제집을 두세권 사면 바로 답안지를 보고 문제집에 답을 달아놓는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서적의 별지2 기재 부분은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짧은 시간에 보다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수험방법론을 제시한 것으로 이른바 '실용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원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공부방법론인 "필살기 1. 한만큼 오른다, 필살기 2.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필살기 3. 문제 읽고 바로 답 읽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공부방법론 자체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것들에 해당하거나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원고만의 독창적인 창작물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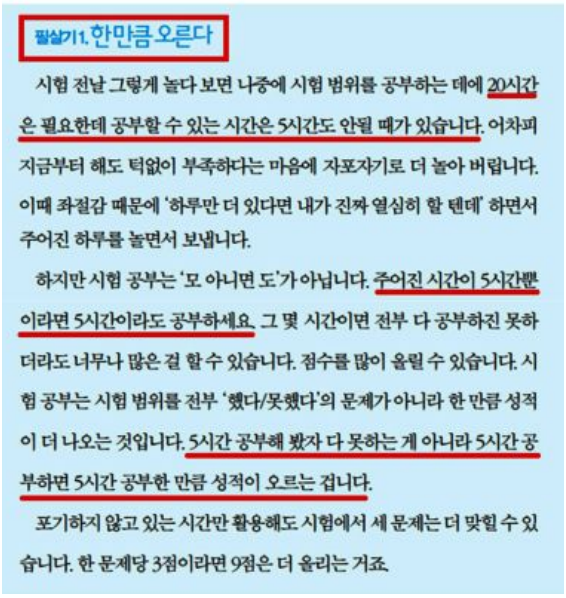
다만, 별지2 기재의 체계, 서술방식, 개별적 표현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는 벼락치기 공부방법론 필살기를 7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방법론에 대한 체계를 세우고,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를 설명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 서적은 전체적으로 저작자인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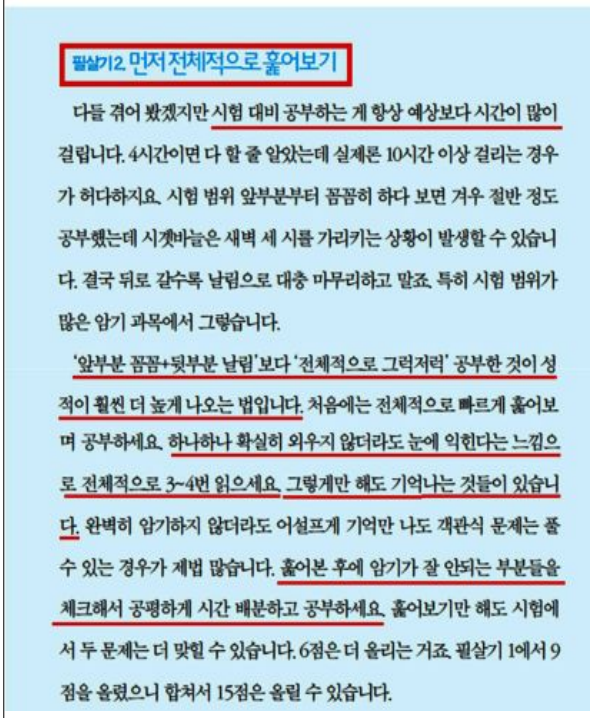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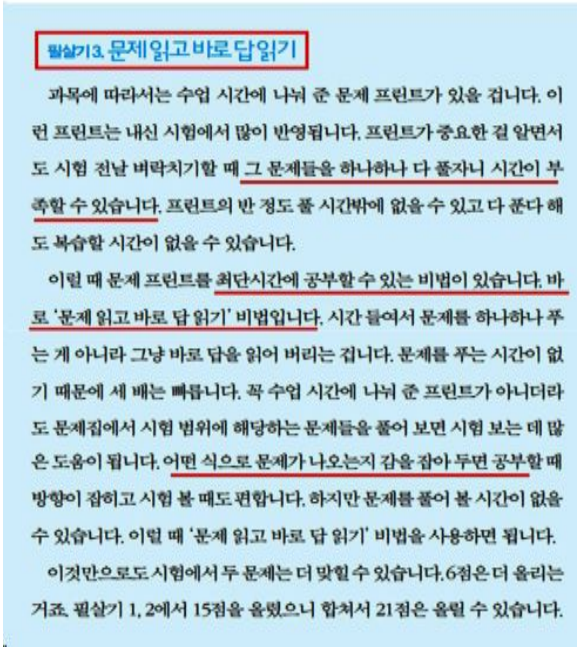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저작권 침해여부

1) 피고는 네이버 카페, 블로그에 '내신 단기 상승 비법 - 벼락치기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1. 벼락도 구름이 있어야 생긴다, 2. 전체적으로 훑어보아라, 3. 밤새지 마라, 4. 문제 읽고 바로 답 봐라, 5. 시험기간만은 개쌍마이웨이를 해라, 6. 한 만큼 나온다」라는 소제목을 달아 세부적인 공부방법론을 제시한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가 유튜브 ○○TV에 게시한 영상은 위 게시글의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위 글과 크게 다르지 않다.

2) 원고가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 서적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피고 게시글을 대비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원고 서적	피고 게시글
1	 필살기1. 한만큼 오른다 시험 전날 그렇게 놀다 보면 나중에 시험 범위를 공부하는 데에 20시간은 필요한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5시간도 안될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부터 해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마음에 자포자기로 더 놀아 버립니다. 이때 좌절감 때문에 '하루만 더 있다면 내가 진짜 열심히 할 텐데' 하면서 주어진 하루를 놀면서 보냅니다. 하지만 시험 공부는 '모 아니면 도'가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이 5시간뿐이라면 5시간이라도 공부하세요. 그 몇 시간이면 전부 다 공부하진 못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시험 공부는 시험 범위를 전부 '했다/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한 만큼 성적이 더 나오는 것입니다. 5시간 공부해 봤자 다 못하는 게 아니라 5시간 공부하면 5시간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오르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있는 시간만 활용해도 시험에서 세 문제는 더 맞힐 수 있습니다. 한 문제당 3점이라면 9점은 더 올리는 거죠.	**6. 한 만큼 나온다.**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고 해도 이 명제는 성립합니다. 20시간 공부해야 하는데 5시간 밖에 안 남았다고요? 5시간이라도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 5시간 철저히 공부하세요. 적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동안 공부했냐 놀았냐가 내신 점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남은 시간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최선을 다하세요
2		**2. 전체적으로 훑어보아라.** 시험공부를 하다보면 항상 계획한 시간보다 더 많

		은 시간이 걸리죠. 적지 않은 학생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앞부분만 꼼꼼하게 공부하다가 뒷부분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공부인데요. "앞부분 꼼꼼 + 뒷부분 놓침" 보다 "전체적으로 적당히" 공부한 것이 성적이 훨씬 잘 나옵니다. 잠깐 생각해봐도 당연한 것이죠. 전자의 경우 뒷부분은 아예 찍어야 합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어려운 몇몇 문제를 빼고는 어느 정도 답을 낼 수 있죠. 전체적으로 한 번 훑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공부를 시작할 때 우선 '전체적으로 한 번 훑어본다' 라는 마인드로 공부하세요. 세부적인 것은 외우지 않더라도 핵심 내용이나 흐름은 기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도 시간이 남았다 싶으면 그 다음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면서 처음에 놓쳤던 것들을 체크하며 공부하세요. 반복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점점 줄여나갑니다.
3		**4. 문제 읽고 바로 답 봐라.** 평소에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은 내신 벼락치기에만 한정된 것입니다. 벼락치기할 때는 문제 읽고 바로 답을 보세요. 고민하면서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문제 읽고 바로 답을 보면 최단시간으로 최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 보고 답 보면서 두 가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답의 근거를 찾는 공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에 대한 공부, 이렇게 공부하시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한 공부만 쏙쏙 할 수 있습니다.

3) 원고가 벼락치기 공부법으로 제시한 7가지 방법들 중 위 3가지 방법들 즉, '한만

큼 오른다',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문제 읽고 바로 답 읽기'에 관한 내용은, 기존에 공부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형식을 이용하여 설명한 것이므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표현이거나 공부방법에 관한 개념, 아이디어 그 자체에 해당한다. 피고가 원고의 위 3가지 공부방법론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원고 저작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공부방법론에 관한 구체적인 표현 형식을 비교해보면 원고의 "필살기1. 한 만큼 오른다" 부분에서 "20시간"과 "5시간"이 구체적인 예시로 등장하는데, 피고의 게시글에서도 동일한 예시가 등장하고 있고, 원고의 "필살기2.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부분에서 "앞부분 꼼꼼+뒷부분 날림", "전체적으로 그럭저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피고 게시글에서도 "앞부분 꼼꼼 + 뒷부분 놓침", "전체적으로 적당히"라는 표현이 있다. 그러나 예시로 든 시간이 "20시간", "5시간"으로 동일하여도 이를 이용한 구체적인 표현방법은 동일하지 않다. 위와 같은 시간은 시험 준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비하여 실제로 주어진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을 나타내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일 뿐 "20시간", "5시간"이라는 특정의 숫자 자체가 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지 않다. "앞부분 꼼꼼+뒷부분 날림" 표현도 피고의 "앞부분 꼼꼼 + 뒷부분 놓침"과 표현이 동일하지는 않으며, 그 의미도 글 전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표현은 뒷부분을 날림으로 대충 마무리한다는 의미이고, 피고의 표현은 뒷부분을 놓친다는 의미이므로 차이가 있다. "앞부분 꼼꼼 +" 표현 부분이 동일하나 단어와 단어를 덧셈 부호로 연결하는 방식은 노트필기나 간단한 메모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방식이고, 그 표현이 전체적인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한 정도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일부 유사한 표현이 존재한다 하

더라도 피고의 영상 및 게시글이 원고 서적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국, 원고 서적이 전체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원고 서적과 피고 게시글의 서술방식, 체계의 차이, 양자 사이의 실질적인 표현의 유사 정도, 위 표현들이 원고 서적과 피고의 게시글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의 침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소결

별지3 기재 피고의 게시글, 유튜브 영상이 원고 서적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목 록

(피고가 인터넷에 게재한 동영상 및 게시글)

1. 유튜브 '○○TV' (https://www.youtube.com/watch?v=**********)

   2018. 4. 13. '◎◎대생이 들려주는 벼락치기 공부법' 동영상

2. 네이버 카페 'C' (https://cafe.naver.com/*****/********)

   2017. 4. 20. '[서연고포 동시합격] 내신 단기 상승 비법 - 벼락치기란?' 게시글

3. 네이버 블로그 'a__*****' (https://blog.naver.com/*********/220*********)

   2017. 4. 20. '[서연고포 동시합격] 내신 단기 상승 비법 - 벼락치기란?' 게시글.